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영화 적용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을 제외〉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48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민영화 적용 대상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안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삭제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욱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6.

다.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 &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Ⅲ. 검토의견

1.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안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삭제 등)

현 행	개 정 안
○ 민영화 적용대상기업 - <u>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u> - <u>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u> - 한국가스공사 - <u>한국중공업주식회사</u>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민영화 적용대상기업 - (삭 제) - (삭 제) - (현행과 같음)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적용 배제</u> - 한국중공업주식회사의 매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배제 - 동일인과 계약 등으로 소유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법 적용 배제	○ (삭 제)

개정안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화법’이라 한다)상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을 제외하려는 것임.

민영화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재 두산에너지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민영화법상 기관의 민영화 또는 공기업 유지 현황]

대상 기관	민영화법 제개정	민영화 또는 공기업	정부 지분 보유 현황
한국담배 인삼공사	1997. 8. 제정	민영화 완료(2002. 10.) 現 KT&G	
한국전기 통신공사		민영화 완료(2002. 5.) 現 KT	
한국가스 공사		공기업 「한국가스공사법」	정부(26.15%), 한국전력(20.47%), 지방자치단체(7.93%), 외국인 (10.25%), 그 외 (35.2%)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민영화 완료(2000. 12.) 現 두산에너지빌리티	
인천국제 공항공사	1999. 1. 개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100%)
한국공항 공사	2002. 1. 개정	공기업 「한국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48.3%), 기획재정부(47.3%), 한국자산관리공사(4.4%)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작성

개정안은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기관을 “민영화 대상 기관”에서 삭제하고 기관 삭제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제21조제2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기획재정부는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은 더 이상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법률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기업) ----- ----- -----.
1. <u>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u>	<u><삭 제></u>
2. <u>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u>	<u><삭 제></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한국중공업주식회사</u>	<u><삭 제></u>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제21조(적용배제) ① (생략)	제21조(적용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u>한국중공업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일인과 다음 각호의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때에는 그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삭 제></u>
1. <u>계약에 의하여 공동의 자본참가 및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u>	
2. <u>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